

4단계 두뇌한국(BK)21 교육연구단(팀)별 자체 운영 세부지침 제정안(예시)

4단계 두뇌한국(BK)21

「부산대학교 GRAND 융합의과학 교육연구단」 사업 운영 세부지침(안)

(제정 2020. 2. 10.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침 제1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020. 11. 27 시행)』에 의거 추진하는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GRAND 융합의과학 교육연구단(이하 ‘융합의과학과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융합의과학과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 양성사업
2. 교육역량 부문 : 융합교육 확대, 졸업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사제도 선진화, 교육 국제화 확대 등
3. 연구역량 부문 : 융합연구 지원 확대, 연구몰입 생태계 조성, 연구지원 강화, 산학협력체제 강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

제3조 (교육연구단(팀)의 구성) ① 교육연구단(팀)(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은 BK21사업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융합의과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팀)장은 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사유와 해당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팀)은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조직) ① 교육연구단(팀)장은 당초 교육부의 BK21사업 공모에 교육연구단(팀)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연구단(팀)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의 『BK21사업 교육연구단장 변경처리 기준』을 따른다.

- ② 교육연구단(팀)에 필요에 따라 부단(팀)장을 둘 수 있으며, 참여교수 중에서 단(팀)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교육연구단(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위원회를 둔다.
- ④ 교육연구단(팀)의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교육연구단(팀)장의 책무) ① 교육연구단(팀)장은 교육연구단(팀)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2. 사업의 총괄 수행
 -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4.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5. 기타 교육연구단(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총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연구단장(팀)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 ③ 교육연구단(팀)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연구단(팀)장은 교육연구단(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체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참여교수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연구단(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획운영위원회) ① 기획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 ② 기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연구단(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대학원생 배정에 관한 사항
 - 3.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 4. 참여대학원생,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6. 교육연구단(팀)의 운영 지침 제정 및 개정
 - 7.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8.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기획운영위원회는 최소한 학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참여교수) 교육연구단(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및 교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2.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의과대학 융합의과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3. 참여교수들의 연구실적, 특히, 사업의 참여도에 따라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참여교수 교체하거나 그 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외 세부사항은 기획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대학원생 선발기준) ① 교육연구단(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2.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수료후연구생(박사)

다.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교육연구단(팀)에 지원하는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참여대학원생의 논문실적 및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수, 교육연구단 참여도가 높은 학생 위주로 참여지도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 한다.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원 이상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재학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30만원 이상

다.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 수료후 연구생 : 월 100만원 이상

3. 교육연구단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은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단(팀)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 내에서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단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신진연구인력은 2년간 SCI(E)급 주저자 논문 1편을 출판해야 한다.(1차년도 제외)
6.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해외학자) 교육연구단(팀)에 해외학자를 초빙할 경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합의과학과의 강의가 가능한 해외주재 교수(외국인 포함) 및 융합의과학과 내 연구트랙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2. 해외방문교수는 교육연구단교수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다.
3.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가. 해외초빙교수 추천서 1부
 - 나. 해외초빙교수 이력서 1부
 - 다. 총괄 연구업적목록 1부
 - 라. 초청기간동안의 활용계획 1부
4. 해외초빙교수 선발은 기획운영위원회를 실시하며 선발 시 다음사항들을 심사한다.
 - 가. 경력
 - 나. 연구업적
 - 다. 강의 및 교육 능력
5.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산학협력전담인력) 교육연구단(팀)에 두는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고급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학협력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 가.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 나.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 다.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원 중인 자

제12조 (참여인력의 채용계약)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교육연구단에서 계약대상자를 선발하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채용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3조 (성과급)**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하여 참여교수에게 연구 성과 및 사업단 운영 기여도에 따라 교육연구단(팀) 운영비에서 [별표 1]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항목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 대학원생,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 ③ 성과급은 정기적, 고정급 지급 등 급여 성격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제14조 (인건비 등의 지급방법)**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교육연구단(팀) 행정직원의 인건비는 매월 20일에 지급 대상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주말 또는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한다.
- ②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업비 배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지급일 현재 사업비 배정잔액이 지급예정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국제협력지원기준) 교육연구단(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대상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제학술대회의 및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대상자는 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② 국제학술대회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대회에 연제(구연 또는 포스터)를 발표자에 한해 지원 한다.
2.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는 논문 한 편당 참여대학원생 1명에게 출장여비를 지원한다.
3. 지도교수의 사정으로 논문저자인 대학원생이 혼자 학회에 참가할 경우, 교육연구단장에게 보고한 뒤 출장여비를 지원한다. 단, 같은 학회에 다른 지도교수가 있을 경우 다른 지도교수의 인솔을 받도록 한다.
4.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국제학술대회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참여대학원생 (연 1회 한정)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학회등록비 포함)

- 금액: ① 유럽·미주: 최대 300만원 ② 아시아권: 최대 200만원

(단, 국제학술대회 개최기간이 해당 학생이 BK21사업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일 경우에 한함)

▲ 항공료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방식 지급)

▲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2) 국제화경비 지원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지원

(4개국 이상 참여,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단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④ 장·단기해외연수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및 단기 해외연수는 각각 15일 이상 또는 15일 이내 해외기관을 방문 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2. 참여교수는 과제 협약 후 지도학생 중 장기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추천하여 교육연구단에 신청하며 성과활용 가능성, 해외학자의 적극성 등 통해 대상자를 교육연구단장이 선발한다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은 기획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정한다.

⑤ 단기해외연수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단기해외연수의 지원금액은 원화로 본인 통장에 입금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단기해외연수의 참가비는 항공료, 출장비(체재비)를 포함한다.
3. 단기해외연수의 경우 지원건수는 1인당 1학기 1회(15일 이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액 등 세부지침은 기획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⑥ 장기해외연수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요금 Economy Class에 준하되 실금액을 인정한다.
2.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는 1인당 월 1,000,000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단 예산에 따라 금액이 변경이 가능하다.
3.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장기해외연수참가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은 불가하다.
4. 기획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변경 및 확정이 가능하다.

제16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팀)에 상설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단의 연차, 중간, 종합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 1회 사업 수행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3. 기타 사업단장이 사업단의 운영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③ 교육연구단(팀)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교 BK21사업 운영성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① 기획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팀)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단(팀)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 교육연구단(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연구단(팀)에 배정되는 BK21사업비와 기타 학과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세부사항) 교육연구단(팀)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연구단(팀)장이 기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교육연구단(팀)에서 이미 집행한 BK21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성과급 지급기준

1. 대상자

성과급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계약직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 사용용도

- ① 성과급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참여교수의 인건비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성과급의 지원 조건 및 지원액수

- ① 성과급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지원한다.

1. SCI논문: 개인성과급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참여교수, 계약교수, 박사후과정생 및 대학원생이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주소가 부산대학교 소속학과로 되어 있는 논문에 한하며,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1인에게 지원되 교신저자를 우선한다. 단,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인분의 성과급을 저자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2. 국제특허 취득: 부산대학교 명의로 국제특허를 취득한 경우 출원인 혹은 발명인 중 대표 1인에게 지원한다. 단, 공동으로 확보한 경우에는 대표 1인에게 지원한다.

- ② 참여교수님 성과급의 금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체사업단운영의 사업에 기여도가 큰 교수에 대하여는 300만원 한도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IF점수, 국제특허, 사업단참여기여도 등 포함)

2. BK21 사업의 회계연도의 해당되는 기간에 발표된 SCI논문, 특허를 BK index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1) BK Index = SCI급 논문 편수 (주저자) × (impact factor*) + 특허수** + 산학협력연구비*** + 기술료수입***** + 사업단 참여기여도
(*Impact Factor: 3미만은 1.0, 3-6미만은 1.5, 6-10미만은 2, 10-15미만은 3, 15-20미만은 4, 20 이상은 5로, **특허: 국제등록은 2, 국내등

록은 1, ***산학협력 연구비 (산학협력단입금금액)는 3,000만원당 1점으로 계산, ****기술료 수입 (산학협력단 입금금액)은 1,000만원당 1점으로 계산)

3. 참여교수 성과급 = (참여교수 개인점수/총점수(참여교수)) × 지원액
 4. 성과급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기획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③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의 지원 조건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단의 운영과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실적 평가 기간은 당해년도 연구기간으로 한다.
 3.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점수	실적평가기간
논문실적 (60점)	SCI(E)급 IF 기준	5.0이상 : 60점 5.0미만: 10~50점	당해년도 참여기간
발표능력 (30점)	학술제 및 대회를 통한 발표	포스터 발표 : 20점 논문 발표 : 10점	당해년도 참여기간
사업단 참여 기여도 (10점)	초청특강 및 세미나 등 행사 참여도 등	기여도 : 10점	당해년도 참여기간

4.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 (참여대학원생 개인점수/총점수(참여대학원생)) × 지원액
 - 신진연구자 성과급 = (신진연구자 개인점수/총점수(신진연구인력)) × 지원액
 5. 성과급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기획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⑥ 교육연구단 직원
1. 교육연구단의 권한으로 연구단전담직원 인건비 항목내에서 교육연구단 업무 실적표 및 평가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가능 할 수 있다.
 2. 업무 평가 기간은 당해년도 연구기간으로 한다.
 3.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업무실적표]

업무영역	업무명	업무비중 (%)	업무내용
지원	·참여대학원생 모집, 등록 ·자격검증 ·신진연구인력 채용 ·신진연구인력 타과제 신청 ·참여교수 변경 ·지출결의서 작성 및 청구	40	참여교수 모집 : 00회 자격검증 : 00회 지출결의서 작성 : 00회
행사	· 기획운영위원회 개최 준비 · 세미나 준비 · 학술제 준비 · 장단기연수 준비 · 기타 행사지원	40	회의 개최 : 00 회 세미나 개최 : 00회 학술제 : 00회
보고서	·보고서 작성 ·자료 수집	20	보고서 작성 : 00회

[업무 평가표]

구분 평가영역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1. 근무실적	업무수행의 달성도	20	
	업무수행의 정확성	20	
2. 직무수행능력	적응력, 전문성, 창의적 기여도	20	
	기획력 및 추진력	20	
	성실도 및 책임감	20	
최종점수		100	
등급	매우 우수: 91점 이상 / 우수 90~81점 보통 : 80~71점 / 미흡 70~ 61점/ 매우미흡: 60점 이하		

4. 사무원 성과급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기획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지원절차

- ① 지원받을 조건이 성립되면 개인(참여교수, 계약교수, 박사후 과정생 및 참여대학생)은 교육사업단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급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성과급의 계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한다.
- ③ 성과급이 지원이 결정된 경우 교육연구단은 해당 개인에게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자는 용도에 맞는 영수증 및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논문 성과급은 발간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성과급 지원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